

[제 4 차 개정]

用 役 適 格 審 査 細 部 基 準

2006. 12.

용역적격심사기준

제정 2001. 12. 20.
1차개정 2003. 11. 13.
2차개정 2005. 03. 21.
3차개정 2005. 08. 19.
4차개정 2006. 12. 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용역 계약 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3호내지 9호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을 총칭한다.

3. “청소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 “경상보수용역”이라 함은 시설물 혹은 사택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경비용역”이라 함은 경비지역내의 시설 및 물자 등 재산에 대하여 도난, 파괴, 재해, 무단침입 등 위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업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8. “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사·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9. “육상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계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10.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결산서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술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청소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사옥사택경상보수용역 평가기준: 별표 3
4. 경비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6.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8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전 사업수행능력 심사) ①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사전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세부기준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으로 사전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사전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시행부서에서 제1항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별도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한다.

제6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일 또는 낙찰자결정일에 다음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아 낙찰대상 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함)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

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 등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한수원에서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4. 한수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제7조(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용역에 관련된 적격심사기준의 세부심사기준 등을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및 발주자의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게시한다.

제8조(적격심사대상자 선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인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점수인 자(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점수배점이 높은 분야에서 높은 자)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 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1조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기업회계기준(또는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관련 신용평가자료(제9조제2항 관련), 결산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6.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 자기평가 입력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8]에 의한다.

1.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의 기준, 금액 또는 면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또는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적용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계속하여 진행중인 청소용역, 경비용역, 경상보수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타 계속하여 과업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용역으로서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이행실적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중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비례하여 당해계약의 전체계약액중 적용기간에 속하는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하되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은 [별표 1 내지 별표 8]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은 [별표 9]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재무상태 평가 관련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1.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명시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선택한 방법을 적용한다.

2. 업종평균을 적용을 위한 평가대상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에서 분류한 업종의 「중분류(종합)」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3.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상기 2호 자료상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 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4. 적격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8조 제3항 제4호의 결산서평가는 최근년도 결산서로 하며, 수시결산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이하 “외감법” 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2.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된 업체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④ 적격심사대상자가 제3항에 의해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감법 적용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감법 비적용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내 회계기준과 상이한 국외소재 업체의 경우는 심사대상자가 심사항목에 대한 해당국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외감법 적용 대상업체의 경우는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등)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인 경우에는 5/100를, “부적정의견” 인 경우에는 10/100을, “의견거절” 인 경우에는 20/100을 재무상태 평가 취득점수에서 각각 감점 처리하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제10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9조에 의한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재무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제9조제5항에 따른 감점은 구성원별로 각각의 취득점수에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처리한다.

3.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항목별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할 경우 제12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다만, 적격심사기간의 장기 소요로 계약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차순위이후 입찰자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사) ① 제11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한수원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의 관련 회계예규와 조달청 집행기준을 참조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1. 이 기준은 2003. 11. 13부터 시행한다.

1. 이 기준은 2005. 3. 21부터 시행한다.

1. 이 기준은 2005. 8. 19부터 시행한다.

1. 이 기준은 2006. 12. 1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기술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 아래 각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사업수행능력을 사전평가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사전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관련 법령 등을 준용,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여 아래 배점을 적용한다.
- ※ 적격심사서류로는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및 필요시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심사분야	평점 계산방법	배점한도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 평점 = $\frac{\text{사전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PQ득점)}}{100} \times 70\text{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입찰가격	· 평점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 인 도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처분,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2점	※ 별표 10
계		100점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심사분야	평점 계산방법	배점한도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 평점 = $\frac{\text{사전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PQ득점)}}{100} \times 50\text{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입찰가격	· 평점 = $5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50점	
신 인 도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처분,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2점	※ 별표 10
계		100점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심사분야	평점 계산방법	배점한도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 평점 = $\frac{\text{사전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PQ득점)}}{100} \times 30\text{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입찰가격	· 평점 = $7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70점	
신 인 도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처분,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2점	※ 별표 10
계		100점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심사분야	평점 계산방법	배점한도	비 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기준비율의 100%이상 : 5.0 - 기준비율의 90%이상 : 4.5 - 기준비율의 80%이상 : 4.0 - 기준비율의 70%이상 : 3.5 - 기준비율의 70%미만 : 3.0	5점	적용업종 _____ 기준비율 _____ %
최근년도 유동비율	- 기준비율의 100%이상 : 5.0 - 기준비율의 90%이상 : 4.5 - 기준비율의 80%이상 : 4.0 - 기준비율의 70%이상 : 3.5 - 기준비율의 70%미만 : 3.0	5점	적용업종 _____ 기준비율 _____ %
입찰가격	· 평점 = $9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75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90점	
신 인 도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처분,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2점	※ 별표 10
계		100점	

[별표2]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청소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용역 I	용역 II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용역	10	-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3	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3
	3. 준비상태	가. 작업용구(차량, 안전장구 포함)의 설계기준 충족	적격여부	적격여부
		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채용	10	10
다. 노무비 지급비율 적정성		10	10	
라. 주된 영업소의 지역소재기간		2	2	
마.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		2	2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III. 신 인 도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처분,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2점	※ 별표 10
합 계			100	100

1. 입찰가격 평점산식

$$\circ \text{ 평점(점)} = \text{입찰가격배점한도} - 5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4. 재무상태 평가는 [별표 2-1] 또는 [별표 9]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용역의 구분

- 용역 I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용역
- 용역 II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 또는
본부단위별로 가장 작은 청소용역(본부 전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 2-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2 관련)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용역 I	용역 II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용역 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40%미만 ~ 0%	10 9.5 9.0 8.5	-	- 동등용역 : 사육 시설(업무시설)의 청소용역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3 2.5 2	3 2.5 2	- 업종평균율 _____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3 2.5 2	3 2.5 2	- 업종평균율 _____ %
3. 준비상태	가. 작업용구 기본장비 확보 - 1톤이상 더블캡트럭 1대 - 16인치이상 왁스머신 2대 - 산업용 진공청소기 4대 - 안전화+안전모+귀마개 전원	기본장비 100% 기타장비 설계기준80% 이상 확보시 적격	적격여부	적격여부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차량 및 장비는 임차 가능 (임대차계약서제시)
	나. 발전소 지역주민 채용 - 입찰공고일 현재 거주자	A. 90%이상 채용시 B. 80%이상 90%미만 C. 70%이상 80%미만	10 9 8	10 9 8	채용각서 제출 소수점이하 절상
	다. 노무비 지급비율 적정	A. 100%이상 계상시 B. 95%이상 100%미만 C. 90%이상 95%미만	10 9 8	10 9 8	노무비계상각서 제출
	라. 주된 영업소의 지역소재기간 - 입찰공고일 현재 계속	A. 3년이상 B. 2년이상 3년미만 C. 2년미만 1년이상	2 1.5 1	2 1.5 1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사업자등록확인원)
	마.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 - 입찰공고일 현재 계속	A. 3년이상 B. 2년이상 3년미만 C. 2년미만 1년이상	2 1.5 1	2 1.5 1	주민등록등본

주)① 이행실적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체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법인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원본제시후 사본제출, 실적증명서는 원본제출), 기성실적을 포함함, 혼합된 실적은 발주기관확인

- 원자력발전소 실적은 최근 10년 이내에 한함.

-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발행한 증명서(사실관계 원본제시)

② 재무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R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의 기준비율과 최근 년도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작업용구 및 장비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까지 목록을 제출하고, 적격심사시에 현장반입 완료(불충족시 부적격처리함)하여야 한다.

④ 지역주민 및 대표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정한 지역의 주민등록거주자

⑤ 노무비는 설계가에 낙찰률(낙찰가/예산가)을 곱한 금액대비로 계상하며, 계약내역서는 각서내용과 일치요

⑥ 지역업체 : 계약업무요령 제35조1항7호에 따른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주된 사업장을 법인등기한 업체(법인이 아닌 경우는 사업자등록확인원), 필요시 면허증 또는 신고증 제출

[별표3] (제4조 제1항 제3호 관련)

사옥사택 경상보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3	3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3
	3. 준비상태	가. 작업용 차량보유	2	2
		나. 작업용구 및 안전장구 보유	4	4
		다. 기술인력 상태	4	4
라. 주된 영업소의 지역 소재기간		2	2	
마. 대표자의 지역 거주기간		2	2	
4. 노무관리	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채용	5	5	
	나. 노무비 지급비율 적정성	5	5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III. 신 인 도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처분,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2점	※ 별표 10
합 계			100	100

1. 입찰가격 평점산식

$$\circ \text{ 평점(점)} = \text{입찰가격배점한도} - 5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재무상태 평가는 [별표 3-1] 또는 [별표 9]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3 관련)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 이행실적	당해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40%미만 ~ 0%	10 9.5 9.0 8.5	-	- 동등이상용역: 당해용역, 공동주택위탁관리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1.0 0.5	-	- 유사용역: 시설물유지관리업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3 2.5 2	3 2.5 2	- 업종평균율 _____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3 2.5 2	3 2.5 2	- 업종평균율 _____ %
3. 준비상태	가. 작업용차량 보유 - 1톤이상 더블캡트럭		A. 2대이상 보유시 B. 1대이상 보유시	2 1	2 1	자동차등록증명원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나. 보수용 공구 - 설계서 명시된 수량기준		A. 100% 보유 B. 90%이상 100%미만 C. 80%이상 90%미만 D. 80%미만	4 3 2 1	4 3 2 1	임차분 포함 (임대차계약서제시)
	다. 기술인력 상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각 1인 필수 - 3년이상 기술경력소유자		A. 10명이상 보유 B. 8명이상 10명미만 C. 6명이상 8명미만 D. 6명미만	4 3 2 1	4 3 2 1	용역대상에 따라 분야 및 인원을 가감할 수 있음
	라. 주된 영업소의 지역소재기간 - 입찰공고일 현재 계속		A. 3년이상 B. 2년이상 3년미만 C. 2년미만 1년이상	2 1.5 1	2 1.5 1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확인원)
	마.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 - 입찰공고일 현재 계속		A. 3년이상 B. 2년이상 3년미만 C. 2년미만 1년이상	2 1.5 1	2 1.5 1	주민등록등본
4. 노무관리	가. 발전소 지역주민 채용 - 입찰공고일 현재 거주자 - 기술인력 포함		A. 90%이상 채용시 B. 80%이상 90%미만 C. 70%이상 80%미만 D. 60%이상 70%미만 E. 50%이상 60%미만	5 4 3 2 1	5 4 3 2 1	채용각서 제출 소숫점이하 절상
	나. 노무비 지급비율 적정		A. 100%이상 계상시 B. 95%이상 100%미만 C. 90%이상 95%미만	5 4 3	5 4 3	노무비계상각서 제출

주) ① 이행실적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관련협회,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체이하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원본제시후 사본제출, 실적증명서는 원본제출), 기성실적을 포함함, 혼합된 실적은 발주기관확인

- 원자력발전소 실적은 최근 10년 이내에 한함.

- 사옥 및 사택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용역에 한함

(단, 청소용역은 불인정, 주상복합빌딩, 아파트실적은 인정)

-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공사는 전문건설업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실적(전문건설협회 확인)에 한함

② 재무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M75.사업지원서비스업의 기준비율과 최근 년도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작업용차량 및 보수용공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까지 목록을 제출하고, 적격심사시에 현장반입 완료(불충족시 부적격처리함)하여야 한다.

- 보수용공구의 보유율 산정산식 = 설계서상의 각 품목별단가 * 보유수량 / 설계서상 공구총액

④ 지역주민 및 대표자, 기술인력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을 제2조1항에 정한 지역의 주민등록거주자

⑤ 노무비는 설계가에 낙찰률(낙찰가/예산가)을 곱한 금액대비로 계상하며,

계약내역서는 각서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시 기 제출된 채용각서 내용과 일치한 채용인력명부를 제출하는 조건

⑥ 기술인력 상태

- 기술인력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업체에 근무자로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에 3년이상 의 기술경력소유자를 말하며, 각 분야에 5년이상 의 기술경력소유자를 최소 1인 미보유시는 0점처리한다.

- 경력증명서 인정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건물시설관리서비스사업자, 주택관리업자가 발행 한 증명서 (공공기관이외 경력자는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납입증명서 중 1개 추가제출)

⑦ 계약업무요령 제35조1항7호에 따른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주된 사업장을 법인등기한 업체 (법인이 아닌 경우는 사업자등록확인원), 필요시 면허증 또는 신고증 제출

[별표4] (제4조 제1항 제4호 관련)

경비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8	6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8 8	6 6
	3. 준비상태	가. 순수 경비인력 보유성 나. 노무비 지급비율 적정성 다. 경비지도사 보유	6 10 적격여부	4 8 적격여부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III. 신 인 도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처분,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2점	※ 별표 10
합 계			100	100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 5 ×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재무상태 평가는 [별표 4-1] 또는 [별표 9]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4-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9 관련)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 이행실적	당해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8 7 6 5	6 5 4 3	- 동등이상용역: 계약목적용역과 동일 또는 그 이상 - 유사용역: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이상의 분야가 불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4 3.5 3 2.5	3 2.5 2 1.5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D. 40%미만	8 7.5 7 6.5	6 5.5 5 4.5	-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업체 재무상태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D. 40%미만	8 7.5 7 6.5	6 5.5 5 4.5	
3. 준비상태	가. 순수 경비인력 보유성 (보유인력 기준)		A. 500명이상 B. 400명이상 ~ 500명미만 C. 300명이상 ~ 400명미만 D. 200명이상 ~ 300명미만 E. 200명 미만	6 5.5 5 4.5 4	4 3.5 3 2.5 2	경비협회 확인증
	다. 노무비 지급비율 적정		A. 100%이상 계상시 B. 95%이상 100%미만 C. 90%이상 95%미만	10 9 8	8 7 6	노무비계상각서 제출
	라. 경비지도사 보유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1항 “별표3” 기준이상 확보시 적격 * 미확보시 부적격	적격여부	적격여부	지방경찰청의 적법배치 여부에 대한 확인증

주) ① 이행실적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체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법인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
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원본제시후 사본제출, 실적증명서는 원본제출), 기성실적을 포함함, 혼합된 실적은 발주
기관확인

② 재무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M75.경비업의 기준비율과 최근년도의 재무
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③ 노무비는 설계가에 낙찰률(낙찰가/예산가)을 곱한 금액대비로 계상하며, 계약내역서는 각서내용과 일치요

[별표 5] (제4조 제1항 제5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5	1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5	15
계			6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70
III. 신 인 도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처분,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2점	※ 별표 10
합 계			100	100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 2 ×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5-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재무상태 평가는 [별표 5-1] 또는 [별표 9]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5 관련)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비고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1. 이행실적	당해 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30 27 24 21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15 13.5 12 10.5	-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D. 40%미만	15 14 13 12	15 14 13 12	-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업체 재무상태 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D. 40%미만	15 14 13 12	15 14 13 12	

- 주) ①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②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③ 심사자료 중 관련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6] (제4조 제1항 제6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유지보수용역 및 S/W사업 공통)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이행실적비율	10	-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5	1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5	15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Ⅲ. 신 인 도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처분,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2점	※ 별표 10
합 계			100	100

1. 입찰가격 평점산식

$$\circ \text{ 평점(점)} = \text{입찰가격배점한도}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6-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재무상태 평가는 [별표 6-1] 또는 [별표 9]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6-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6 관련)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이행 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10	-	
		B. 70%이상 ~ 100%미만	9		
		C. 40%이상 ~ 70%미만	8		
		D. 10%이상 ~ 40%미만	7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20%이상	15	15	-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업체 재무상태비율
		B. 80%이상 ~ 120%미만	14	14	
		C. 40%이상 ~ 80%미만	13	13	
		D. 40%미만	12	1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20%이상	15	15	
		B. 80%이상 ~ 120%미만	14	14	
		C. 40%이상 ~ 80%미만	13	13	
		D. 40%미만	12	12	

주) ①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②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③ 심사자료중 관련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7] (제4조 제1항 제7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20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5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III. 신 인 도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처분,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2점	※ 별표 10
합 계			100	100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 2 ×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7-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재무상태 평가는 [별표 7-1] 또는 [별표 9]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7-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7 관련)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기준]	A. 100%이상	30	20	- 동등이상용역: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B. 70%이상 ~ 100%미만	28	19	
		C. 40%이상 ~ 70%미만	25	17	
		D. 10%이상 ~ 40%미만	22	15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20%이상	5	5	-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업체 재무상태비율
		B. 80%이상 ~ 120%미만	4.5	4.5	
		C. 40%이상 ~ 80%미만	4	4	
		D. 40%미만	3.5	3.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20%이상	5	5	
		B. 80%이상 ~ 120%미만	4.5	4.5	
		C. 40%이상 ~ 80%미만	4	4	
		D. 40%미만	3.5	3.5	

- 주) ①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②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③ 심사자료중 관련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8] (제4조 제1항 제8호 관련)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20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	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5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III. 신 인 도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처분,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2점	※ 별표 10
합 계			100	100

1. 입찰가격 평점산식

$$\circ \text{ 평점(점)} = \text{입찰가격배점한도}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8-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재무상태 평가는 [별표 8-1] 또는 [별표 9]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8-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8 관련)

심사분야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 이행실적	당해 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30 27 24 21	20 18 16 14	- 동등이상용역: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 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유사용역: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15 13.5 12 10.5	10 9 8 7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D. 40%미만	5 4.5 4 3.5	5 4.5 4 3.5	- 업종평균을 대비 당해업체 재무상태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20%이상 B. 80%이상 ~ 120%미만 C. 40%이상 ~ 80%미만 D. 40%미만	5 4.5 4 3.5	5 4.5 4 3.5	

- 주) ①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②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③ 심사자료중 관련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9] (제9조 제2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회사채	기업어음	평 점(점)		
		배점한도가 30점인 경우	배점한도가 10점인 경우	배점한도가 8점인 경우
AAA	-	30.0	10.0	8.0
AA+, AA0, AA-	A1	29.4	9.7	7.7
A+	A2+	28.8	9.4	7.4
A0	A20	28.2	9.1	7.1
A-	A2-	27.6	8.8	6.8
BBB+	A3+	27.0	8.5	6.5
BBB0	A30	26.5	8.2	6.3
BBB-	A3-	26.0	7.9	6.0
BB+, BB0	B+	25.5	7.6	5.8
BB-	B0	25.0	7.4	5.5
B+, B0, B-	B-	24.5	7.2	5.3
CCC+ 이하	C 이하	24.0	7.0	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평가점수는 [별표 1 내지 별표 8]에 정한 재무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배점한도의 경우에는 배점한도가 30점인 경우와 비례 환산하여 적용한다.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	-1.0	한수원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2년간 한수원에서 실시한 입찰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이행지체,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킨 자	-0.5	○ 1회이상 서면 주의통보 ○ 전체 5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0.7	○ 대외기관의 무혐의처분 ○ 전체 10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한 경우
	-1.0	○ 사법기관의 무혐의결정 ○ 당해업체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주,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 ①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 ②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시 동일 심사 항목 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 ③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입찰에 부치는 심사대상 용역의 수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행기간을 적용한다.
- ④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격심사 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가 각각 승계한 것으로 본다.
※ 합병의 경우 합병후 신설된 업체,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함
- ⑤ 사법기관의 무혐의처분/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주의통보한 경우에 한한다.
- ⑥ 당해 적격심사기준 시행일 이후 사실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사항부터 적용한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회사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학술연구(), 시설관리(), 청소(), 경비(), 정보통신(), 폐기물(), 기타()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인도			
	소계			
입찰가격				
합계		100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한수원업체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수력원자력(주)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학술(), 정보통신() 청소(), 시설관리() 경비(), 폐기물처리(), 기타분야(),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				
	주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최초, 합병관련, 외감법비적용업체) 결산서 검토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한수원 업체등록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업 종	서비스 / ()	전화번호	
재무상태 검토내용			
구 분	재무비율(%)	산출근거(단위 : 원)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검 토 기 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나. 결산서의 종류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1년 미만) 설립에 따른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에 의해 동 세무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 외감법비적용업체의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검토)하고 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 무 소 :

주 소 :

연 락 처 :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괄	1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별지 제3호
재무상태	4	- 결산서(대차대조표) - 결산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 신용평가자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지정평가기관	별지 제4호
기 타	5	-	관계기관	